## 예 산 총 칙

##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7,592,327	9,827,770
일반회계		258,626,131	7,758,784
특별회계		68,966,196	2,068,986
	공기업특별회계	29,363,690	880,91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363,690	880,911
	기타특별회계	39,602,506	1,188,075
	수질개선 특별회계	26,360,288	790,809
	주택사업 특별회계	6,720,580	201,617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23,707	24,711
	자활기금 특별회계	1,695,574	50,867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502,544	75,076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91,800	20,754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89,205	17,676
	기반시설 특별회계	30,978	9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87,830	5,635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77,345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